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5 선고 2023가단1679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피고B

변론 종결 2024. 9. 10.

판결 선고 2024. 11. 5.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2023. 8. 1.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을 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14. 11. 28. 원고를 채권자, C를 채무자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4년 제1863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4. 11. 26. 금 사천구백육십칠만오천(₩49,675,000) 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5. 7. 20.까지 지불기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나. C는 2022. 8. 15. E, F와 서울 양천구 G건물, 지하1층 H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70,000,000원, 임차기간 2022. 9. 15.부터 2024. 9. 15.까지로 정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로 하여 '계모임(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C의 누나인 피고는 2023. 8. 1.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사업자명의를 C에서 피고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채무초과 상태이던 2023. 8. 1. 피고에게 위 음식점을 양도하였다. C의 위와 같은 영업양도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위 영업양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다만 피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음식점의 영업재산 및 영업권을 포함한 영업 가액인 5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C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23. 8. 1.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명의를 C에서 피고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위 음식점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음식점은 당초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무렵부터 피고가 대표자로 운영해온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태균